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6
----------	------

제출년월일 : 2007 .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대형 할인 매장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시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시민시장이 점포당 11.2제곱미터의 소규모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사용인에게 8개까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생계보호 차원에서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사용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사용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하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시설물의 사용권을 허가없이 이전·전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치유하고 이후 시설물 관리의 사용권을 염격하게 관리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행정절차법」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4조·제80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 - 미 반영(별첨)

- 입법예고 : 2007. 2. 7 ~ 2007. 2. 26(20일)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4개”를 “8개”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항 중 “연 8%”를 “연 6%”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8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 또는 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권을 이전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소관실과		지역경제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담당 전덕주
	담당자 성명·전화	임복렬 (행정 22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u>4개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u></p>	<p>제4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8개.....</u></p>
<p>제5조(사용권의 금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p>	<p>제5조(사용권의금지) ①..... <u>다만,</u> <u>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u> <u>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u> <u>있다.</u></p>
<p>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생략) 1. ~ 4. (생략) <u><신설></u></p> <p>② 사용인이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③..... </p>
<p>제7조(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인은 사용료를 <u>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u> 제26조에 의하여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u>지방재정법시행령</u> 제91조에 의하여 연 8%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p> <p>제8조(사용료의 연체요율) 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u>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u>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u>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u>」 제35조..... ③.....「<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제14조제5항.....6%..... 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연체요율)「<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u>지방재정법</u> 제85조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다</p>	<p>제9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83조.....</p>
<p>제14조(보험계약) ① 사용인은 <u>지방재정법시행령</u>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내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보험계약) ①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u>」 제4조.....</p> <p>.....</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 또는 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권을 이전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6월 30일 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6
----------	------

제안년월일 : 2007. 5. 18.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사용료가 연납, 분기납, 분기납 이자계산 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개정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자율의 조정으로 인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변경 작업이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부칙 제1조, 제2조)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 또는 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권을 이전받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u>부 칙</u></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u>2007년 7월 1일</u>부터 적용한다.</p>	<p><u>부 칙</u></p> <p>제1조(시행일) <u>2008년 1월 1일</u>.....</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 또는 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권을 이전받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u>2007년 6월 30일까지</u>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p>	<p>제2조(경과조치)<u>2007년 12월 31일</u>.....</p>